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개정령(안)

(산업자원부공고 제2000-135호 2000년 8월 30일)

1. 개정이유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종전보다 단순화하고 중소기업이 되는 요건을 완화하여 제도 운영에 있어서 신축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며,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범위기준을 확대하고 농업 등 1차 산업의 범위기준을 신설하여 앞으로의 산업구조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중소기업 범위기준의 적용 대상이 되는 “기업”을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상법상의 회사와 개인사업자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영리법인으로 함.

나. “자본금”과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직전 사업연도말일 현재 대차대조표 또는 손익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연도 중에 창업한 기업은 12개월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다. 종전 제조업의 자산총액기준을 폐지하고, 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 기준 또는 자본금기준, 농업·어업 등 1차 산업과 기타 모든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기준 또는 매출액기준 중 어느 한 기준에만 적합하면 중소기업으로 보도록 하며, 업종별 중소기업 범위기준은 별표와 같음.

라. 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12월 이내에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을 부여하지 아니함.

마. 종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금번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개정령의 시행일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도록 함.

〈별 표〉

중소기업범위기준

해 당 업 종	표준산업분류부호	범 위 기 준
1. 제조업	D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2. 광업 건설업 운수업	C F 60~62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3. 대형종합소매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	5211 72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4. 종자 및 묘목 생산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통신업 영화산업 방송업	01123 E 5171 55111 55113 64 871 872	상시근로자수 2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5. 어업 통신판매업 방문판매업 여행알선,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병 원 공연산업 뉴스제공업 하수처리, 폐기물처리 및 청소관련 서비스업	B 5281 52893 63 712 74 8511 873 881 90	상시근로자수 1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6. 농업 및 임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 연구 및 개발업 사업지원서비스업 식물원, 동물원 및 자연공원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산업용 세탁업	A 51 5212 73 75 8823 88992 93911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7. 기타 모든 업종		상시근로자수 30인 미만 또는 매출액 20억원 이하